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48 발의연월일: 2021. 3. 5.

발 의 자:조명희·양금희·배현진

권명호 · 하영제 · 박대수

정경희 · 추경호 · 백종헌

서범수 · 김승수 · 변재일

정희용 · 김상희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·기술이 창출되고 있고, 이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 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(Gender Analysis)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 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음.

우리나라의 경우 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립된 '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·지원 기본계획(2019~2023)' 은 '젠더혁신 체계 구축'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, 실제

연구현장에서는 젠더분석이 미미한 실정임.

이에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,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 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	제3조(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
기본원칙) ① ~ ⑥ (생 략)	기본원칙) ① ~ ⑥ (현행과 같
	승)
<u><신 설></u>	⑦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
	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
	려하여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
	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
	결과를 반영하였는지 여부를
	고려하여야 한다.
<u>⑦・⑧</u> (생 략)	<u>⑧</u> ・ <u>⑨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
	과 같음)